

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

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」(교육부 훈령)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”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

-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
-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-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-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-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-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-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-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-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-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,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-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

○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

△휴대전화 △스마트기기(스마트워치 등) △디지털 카메라 △전자사전 △MP3 플레이어 △카메라펜 △전자계산기 △라디오 △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△통신·결제 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있는 시계 △전자담배 △통신(블루투스)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

○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

△신분증 △수험표 △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△흰색 수정테이프 △흑색연필 △지우개 △샤프심(흑색, 0.5mm) △시침·분침(초침)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·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가 모두 없는 시계* △마스크(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) 등

* 통신·결제기능(블루투스 등)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(LCD, LED 등)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

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

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(탐구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)

1 4교시 탐구영역(사회·과학·직업)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



2 문제지 상단에 성명, 수험번호, 응시 순서(1 또는 2) 기재



3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,
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(표지 포함)는 반으로 접어
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.



4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,
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

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양식

4교시 답안지 양식

※ 2020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, 2020학년도 문제지 및 답안지를 예시로 제시함